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7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구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구속자 등에 대한 서류 송달 특례 신설

개정안은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현행법상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서류의 수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자의 경우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라 우선 그 주소지로 서류를 송달한 후 이를 대신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 교정시설 등으로 송달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자의 경우 해당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하도록 하려는 것임.

불필요하게 송달을 중복 실시함에 따른 행정비용 가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민사소송법」은 이미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해당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

② 「국세기본법」도 2018년 12월 31일 개정(2019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2)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보완

개정안은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금지 재산 등을 압류한 경우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4호).

현행법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금액에 따라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시효를 중단시키고 있음.

다만, 「지방세징수법」은 압류를 금지(같은 법 제40조)하거나 압류를 즉시해제(같은 법 제63조제1항 등)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압류한 경우에는 해당 압류가 무효가 되어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에도 그 사실이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① 국민의 법률 이해를 쉽게 하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② 「국세기본법」도 2023년 12월 31일 개정(2024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3) 후발적 경정청구 표현 명확화

개정안은 현행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3호).

현행법 제50조제2항은 지방세가 최초 부과·징수 또는 신고·납부된 이후 특정한 사유(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후발적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후발적 경정사유를 같은 항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과·징수 세목(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과 신고·납부 세목(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같은 항 제3호의 경정사유가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로 표현되어 있어 신고·납부 세목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개정안은 해당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임.

① 현행법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주체를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신고·납부)”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부과·징수)”로 표현하여 부과·징수 세목도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임을 전제하고 있고,

②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들도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과·징수 세목이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자구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실질적 효력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표현을 정정하는 개정에는 적용례를 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안과 같은 적용례를 두는 것이 기존 규정에 대한 해석상 오해 (부과·징수 세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해석)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요소 추가

개정안은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 요소에 “미납·과소납 세액의

0.66%”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납부지연가산세란 납세자가 지방세를 미납부·과소납부·초과환급받은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으로서,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에 적용되는 ① 납부지연가산세와 특별징수 의무자에 적용되는 ②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됨.

한편, 납부지연가산세는 2020년 12월 개정(2024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종전 「지방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방세징수법」상 가산금·증가산금이 통합된 것으로서, 다음 표와 같이 원칙적으로 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증가산금 산정기준 각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만 하나로 통합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의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舊가산금 항목(체납액 $\times$ 3%)만 개정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개정안은 이를 현행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요소 중 하나로 사후 반영(체납액 $\times$ 0.66%로 인하 반영)하려는 것임.

① 이는 2020년 12월 개정 당시 누락된 사항을 사후 시정하려는 것이라는 점, ②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舊가산금은 다음 표와 같이 신고·납부기간 도과 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부과·고지한 납기를 준수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이를 부과하지 않으면 해당 납기를 준수하지 않을 유인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공포 후 시행 전 조항(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을 대상으로 입안

되어 있는데,

법률안 입안시 공포 후 시행전 법률은 조·항·호·목 등 세부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행법 제56조 중 공포 후 시행 전 조항은 같은 조 제3항일뿐 동 개정내용의 대상인 같은 조 제1항은 이미 시행 중인 조항이므로, 현행 조항을 대상으로 개정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5)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 정비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 및 「지방세법」상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에 연동하여,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 제3항 삭제).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체계(국세)로서,

① 주식·채권·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20~25%의 세율로 포괄적으로 과세하되, ②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분류과세)하며, ③ 기본공제 및 손실을 상계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되 5년간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징을 가짐.

당초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상황인데, 2024년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둔 현재 까지도 그 시행을 둘러싼 찬반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임.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은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목적을 언급하며 ① 현행 조세체계는 금융상품의 유형 및 소득 실현방식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있어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손실 상계 및 이월을 통하여 실질적인 순수익만 과세하는 것이 응능과세원칙상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반면 정부를 포함하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입장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2020년 추정치 기준으로 과세대상자가 15만명 까지 확대(세부담 +1.5조원 증가)되고 그 밖에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발생하여 투자자가 해외시장 등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찬반입장을 고려하고, ② 기획재정위원회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결과 및 우리 위원회의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6) 이의신청 대리인 관련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 상향 등

개정안은 이의신청 대리인을 전문자격사가 아닌 친족 등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을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2항).

현행 조세관계법들은 국세·지방세에 대하여 다양한 행정상 불복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청구가 있고, 지방세의 경우에도 심사청구만 제외한 나머지 제도가 「지방세기본법」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한편,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전문성·난이도를 고려하여 신청인·청구인을 대리해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 제도를 두면서 그 자격을 변호사·세무사 및 일부 공인회계사로 제한하되,

신청인·청구인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신청·청구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사건”은 상기 자격사 외에도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중 이의신청의 “소액사건” 기준금액을 1,000만원 → 2,0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첫째, 현행법이 소액사건에서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은 영세한 신청인·청구인이 비용문제로 변호사·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여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참고로, 같은 이유에서 다음 표와 같이 행정심판은 모든 사건에 대해 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민사소송도 1억원 이하 일부 단독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상향하려는 금액 기준(2,000만원)이 과다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둘째, 동일한 지방세에 대한 행정상 불복제도 중 (조세)심판청구의 소액사건 기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국세·지방세 모두를 일괄 규정하고 있는데, 2024년 2월 29일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심판청구의 소액사건 기준이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의 소액사건 기준금액도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제도간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7)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개정안은 현행 영세한 개인뿐 아니라 영세한 법인의 경우에도 지방세 불복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 신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국세기본법」상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지방세 불복절차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려는 일정 소득·재산 이하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료로 변호사·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기준이 국선대리인에 비해 협소하다는 인식 하에 신청자격(개인 → 개인·법인)과 대상금액(1,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을 다음 표와 같이 확대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이 중 법률 개정사항인 신청자격에 현행 개인뿐 아니라 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는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취지이며 특히, 신청자격은 「국세기본법」상 국선대리인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8) 지방세 운영 관련 포상 근거 신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3항).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에게 포상을 제공하여 추가적인 공적 창출이 촉진된다면 이는 소액의 예산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단으로서 효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미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개정안에 따른 포상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① 포상의 유형 중 포상금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포상 근거가 명시될 경우 관련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 ②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에는 동일한 포상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국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안번호 22047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그 심사 경과 또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내용은 단순 표현 변경으로서 규정의 효력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적용례를 두는 것이 오히려 기존 규정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삭제하면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신고·납부 세목에만 해당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동 개정내용은 단순 표현 변경으로서 규정의 효력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적용례를 두는 것이 오히려 기존 규정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4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5조 및 부칙 제6조를 각각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u><삭 제></u>
<u>제5조</u>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생략)	<u>제4조</u>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개정안 부칙 제5조와 같음)
<u>제6조</u>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생략)	<u>제5조</u>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개정안 부칙 제6조와 같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중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66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제56조제1항제2호의2
· 제3호”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
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
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1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
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제35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1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u>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 11. (생략)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 다. (생략)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u>납부지연가산세</u>: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 사. (생략) ②·③ (생략)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1. 2. (생략) 3. <u>제56조제1항제3호</u>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②·③ (생략)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 3. (생략) 4. <u>압류</u> ② ~ ④ (생략)	<u>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u>----- 마. ~ 사.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u>-----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생략)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 ⑦ (생략)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발생하였을 때

③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
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
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분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illegible]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생략)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 마. (생략)

4. 5. (생략)

② ~ ⑥ (생략)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생략)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④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

----- 제56조제1항제2

호의2·제3호-----

다. ~ 마.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2

천만원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

-----.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

<u>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u> 3.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② (생략) <u><신설></u>	<u>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u> <u><삭제></u>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
---	--